

 <b>국토교통부</b>	<h1>보도자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b>보다 나은 정부</b>
	<b>배포일시</b>	<b>2018. 12. 5.(수)</b> <b>총 6매(본문2)</b>	
<b>담당부서</b>	주거복지정책과	<b>담당자</b>	·과장 김석기, 사무관 우종하, 주무관 최혜영 ·☎ (044) 201-3358
<b>보도일시</b>		2018년 12월 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5일부터 고시원·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직접 발굴

-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 이를 위해 12월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사전신청 시작일 8.13부터 11.30까지)되었으나,
  - \* 기존에는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가능 → 현재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하여 수급여부 결정
  -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하여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 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 밀집지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인근 쪽방촌 등
  - \*\* 정책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홍보 병행
- 이와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 전화상담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마이홈센터(위치안내 ☎1600-1004),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센터별 연락처 붙임2)를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Q1.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그리고 신청대상은?**

**A :** 주거급여는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 지원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myhome.go.kr)을 방문하여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 '19년 44%로 확대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8년 선정 기준 (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 선정 기준 (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Q2.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A :**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Q3. 어디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복지포(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홈(myhome.go.kr)을 통해서도 정보확인 및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위해 통장 거래 내역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수급자로 선정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지?**

**A :**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21.3 (23.3)	18.7 (20.1)	15.3 (16.3)	14.0 (14.7)
2인	24.5 (26.7)	21.0 (22.6)	16.6 (17.8)	15.2 (16.1)
3인	29.0 (31.6)	25.4 (27.2)	19.8 (21.3)	18.4 (19.4)
4인	33.5 (36.5)	29.7 (31.7)	23.1 (24.7)	20.8 (22.0)
5인	34.6 (37.7)	30.8 (32.9)	24.2 (25.8)	21.8 (22.9)
6인	40.3 (44.1)	36.4 (38.9)	27.6 (29.6)	25.2 (26.7)

\* 표의 괄호안 숫자는 2019년 기준임대료

## 붙임2

## 마이홈센터 및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현황

### □ LH 마이홈센터 (총 52개소, 위치안내 1600-1004)

지역	마이홈센터
서울	서울권 강남권 강북권 강서권 강동권 의정부권 남양주권 (7개소)
인천	인천광역시권 고양권 파주권 인천남동권 인천북서권 부천권 김포권 (7개소)
경기	경기권 수원권 안양권 성남권 용인권 화성권 오산권 (7개소)
부산울산	부산권 부산동부권 울산권 (3개소)
강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3개소)
충북	청주권 충북동북부권 (2개소)
대전충남	대전권 대전북부권 천안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5개소)
전북	전주권 전북남부권 익산권 (3개소)
광주전남	광주권 광주광산권 광주북부권 목포권 순천권 (5개소)
대구경북	대구권 대구동부권 대구서부권 경북동부권 경북서부권 경북북부권 (6개소)
경남	창원권 경남서부권 양산권 (3개소)
제주	제주권 (1개소)

###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구분	센터	위치	연락처
서울	종로 주거복지센터	종로구 종로 11길 18 선일빌딩 503	02-722-8658
	중구 주거복지센터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별관 6층	02-2138-8791
	용산 주거복지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3층	02-6713-5055
	성동 주거복지센터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	02-6933-8051
	광진 주거복지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41, 4층	02-2138-8373
	동대문 주거복지센터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602	02-2138-1901
	종량 주거복지센터	종량구 신내로 16길 33, 상가 103	02-3421-8961
	성북 주거복지센터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 705	02-922-5942
	강북 주거복지센터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02-980-4808
	도봉 주거복지센터	도봉구 노해로 69길 15, 렉시온프라자 204	02-6958-8081
	노원 주거복지센터	노원구 상계로 23길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02-930-1180
	은평 주거복지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11호	02-388-2979
	서대문 주거복지센터	서대문구 거북골로 4-18	02-303-3733
	마포 주거복지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담2차 206호	02-6383-6100
	양천 주거복지센터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프라자 501	02-6933-6191
	강서 주거복지센터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 지하1층	02-2064-0896
	구로 주거복지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26길54 시설관리공단 별관2층	02-853-9275
	금천 주거복지센터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2002호	02-855-4522
	영등포 주거복지센터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602	02-785-7044
	동작 주거복지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47 대방1 상가 202	02-816-1688
관악 주거복지센터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02-875-3197	
서초 주거복지센터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3	02-6202-9000	
강남 주거복지센터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동 309호	070-5008-9213	
송파 주거복지센터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02-400-2271	
강동 주거복지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660 엘크루 507호	02-6933-6873	
대구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365길 3	053-563-0777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 16길 53	053-425-5539
강원	원주주거복지센터	원주시 중앙로 83 밝음신협 603호	033-745-2333
충남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3, 4층	041-572-6606
경기	수원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인로 126	031-280-6340
	시흥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79길21, 202호	031-311-2203



< 현수막 · 생활정보지 줄광고 >



**아들 딸 있어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웃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상담

콜센터 1600-0777  
www.myhome.go.kr

발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 신청안내문>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아들딸 있어도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안내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기준

입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료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지급일

입차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시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관련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마이홈센터 (☎ 1600-1004)

